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6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공공기관 근무자의 불편,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

2.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추진하되, 기관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근거 확대

○ 공공기관이 입지한 도시의 인구 수에 따라 요일제 실시여부, 참여 차량 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요일제 의무대상에서 제외

□ 승용차 요일제 제외차량 범위 확대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기능 강화

○ 제외 차량에 대한 세부사항, 요일제 실시여부(인구 30만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요일제 적용대상 등 심의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2825lwj@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부칙(2016.5.27.)~부칙(2023.8.1.) (생략) <신 설>	부칙(2016.5.27.)~부칙(2023.8.1.)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3-000호,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부칙 신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3. 민원인 차량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ㅇ제1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이 별표 7과 중복되어 조항을 간략화하고, 세부 내용은 별표 7을 따르도록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ㅇ조항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 고
< 별표 7 >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단,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④ 민원인 차량(단,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 별표 7 >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④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 특정 업무 수행 차량	○ 대상을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에만 한정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기관 소유 업무용 차량은 제외 ○ 현행 3항을 3, 4항으로 구분
	<삭 제>	○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만 대상이므로, 민원인 차량 삭제
<신 설>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위치한 시·군 규모에 따라 대중교통 편리성의 정도를 고려한 현실적 방안 마련

현 행	개 정(안)	비 고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신 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ㅇ공공기관이 위치한 시·군 규모에 따라 대중교통 편리성의 정도를 고려한 현실적 방안 마련
나.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ㅇ용어 수정 및 제도 현행화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 고</th></tr>
<tr>
<td>
〈 요일제 적용 방식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table>
<tr><td rowspan="2">유 형 별</td><td colspan="5">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td><td rowspan="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td></tr>
<tr><td>월</td><td>화</td><td>수</td><td>목</td><td>금</td></tr>
<tr><td>선택요일제</td><td colspan="5">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td></tr>
<tr><td>끝번호요일제</td><td>1, 6</td><td>2, 7</td><td>3, 8</td><td>4, 9</td><td>5, 0</td></tr>
</table>
<u>다.</u>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td>
<td>
〈 요일제 적용 방식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table>
<tr><td rowspan="2">유 형 별</td><td colspan="5">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td><td rowspan="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td></tr>
<tr><td>월</td><td>화</td><td>수</td><td>목</td><td>금</td></tr>
<tr><td>선택요일제</td><td colspan="5">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td></tr>
<tr><td>끝번호요일제</td><td>1, 6</td><td>2, 7</td><td>3, 8</td><td>4, 9</td><td>5, 0</td></tr>
</table>
<u>마.</u>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td>
<td>○조항 변경</td>
</tr>
</table>

현 행	개 정(안)	비 고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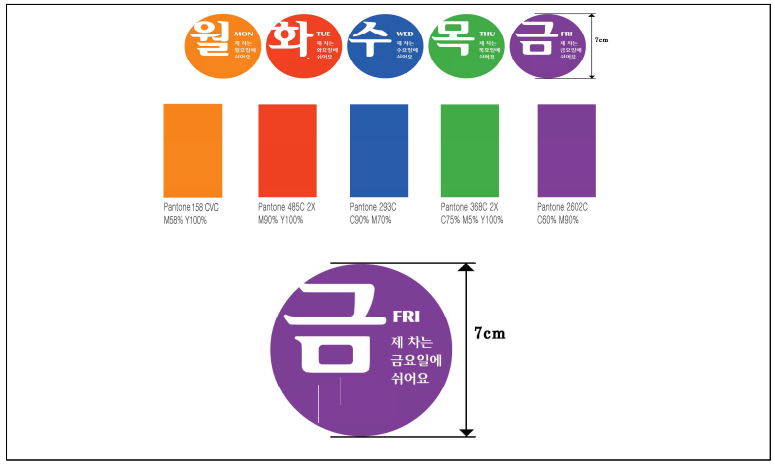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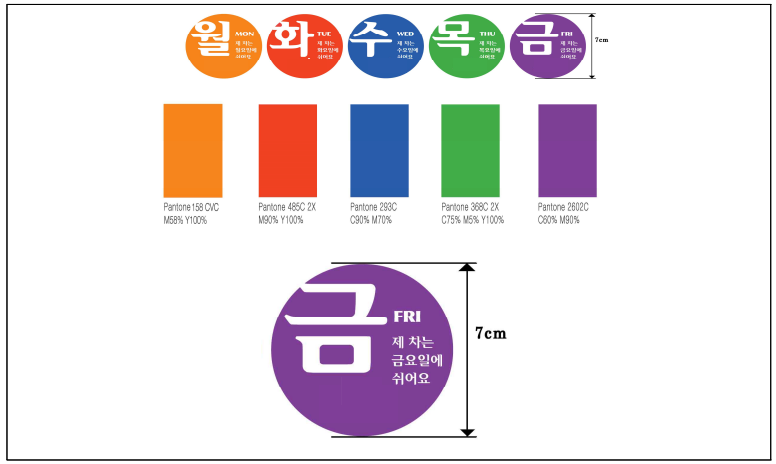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나. 제외대상	나. 제외대상	
<신 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 추가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부처 명칭변경 반영
○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①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퇴근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퇴근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조항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④ 특정 업무 수행 차량 ○ 긴급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정 업무 수행 차량 정의 추가
③ 민원인 차량 ○ 각 공공기관에서는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임시 제외증 등을 부여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삭 제>	○승용차 요일제 적용 의무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으로, 민원인 차량 제외
<신 설>	⑤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제외대상 추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⑥ 장거리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제외대상 추가
<신 설>	⑦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대상 추가
<신 설>	⑧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대상 추가
④ 기타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중복에 따른 삭제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제외증명서 부착 방법 명시
<신 설>	○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문구 수정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하고, 그 외 사유에 의해 발급할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중복에 따른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 기타 특이사항 ○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 기타 특이사항 ○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문구 수정

<table>
<tr><th>현 행</th><th>개 정(안)</th><th>비 고</th></tr>
<tr>
<td>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table>
<tr><td>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td></tr>
</table>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table>
<tr><td>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td></tr>
</table>
</td>
<td>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table>
<tr><td>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td></tr>
</table>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table>
<tr><td>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td></tr>
</table>
</td>
<td></td>
</tr>
</table>